

수원지방법원 2021. 8. 24 선고 2020가단51978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메리트

담당변호사 조현수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7. 13.

판 결 선 고 2021. 8.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가 2019. 4. 15. 피고에게 한 40,000,000원의 변제행위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농축임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6. 1. 20. 설립되었고, 피고의 친오빠인 D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0.경부터 소외 회사의 회계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8. 10. 15. 소외 회사의 광주은행 계좌에 4,000만 원을 입금함으로써 소외 회사에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다. D은 2018. 10. 29.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같은 날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E, D, 피고가 각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피고는 소외 회사의 회계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소외 회사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OTP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업무상 관리하였는데, 2019. 4. 15. 차입금상환조로 소외 회사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농협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이체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제’라 한다).

마. 원고는 소외 회사를 대표하여 수사기관에 피고를 위 4,000만 원에 관한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법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9. 6. 17. “피고가 소외 회사에 4,000만 원의 채권이 있었던 점, 소외 회사의 운영을 담당하던 F에게 수차례 4,000만 원을 인출해야 한다고 고지했던 점 등을 볼 때 피고가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F 역시 위 4,000만 원은 돌려주어야 하는 돈이라고 진술하고, 고소인 역시 수차례 소외 회사의 차입금 현황에 피고에 대한 채무 4,000만 원이 존재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으로 볼 때 피고가 횡령의 고의로 4,000만 원을 이체하였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9. 6.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원고가 2018. 9. 18.부터 2019. 3. 12.까지 소외 회사에 10회에 걸쳐 합계 9,517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외 회사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2019가단215783)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4. 28.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9,517만 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변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변제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2)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변제 당시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9,517만 원, 피고에 대하여 4,000만 원, G에 대하여 3,690만 원, H에 대하여 1,730만 원, I에 대하여 3,000만 원, J에 대하여 70만 원, F에 대하여 40만 원, 합계 220,470,000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변제 당시 소외 회사의 광주은행 계좌, 신한은행 계좌, 농협은행 계좌에 합계 222,738,975원의 예금 잔액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달리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변제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가사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변제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변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앞서 본 것과 같이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한 경우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에만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F에게 수차례 “2018. 10. 15. 소외 회사의 계좌로 입금한 4,000만 원은 아들의 방값에 사용해야 하니 인출을 하겠다.”라고 말한 후 2019. 4. 15. 소외 회사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농협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변제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려면 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또는 실질적 운영자인 F가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어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는 채권자인 피고의 거듭된 독촉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피고가 2019. 4. 15. 위 4,000만 원을 이체하는 것을 묵인(默認)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피고가 2019. 4. 15. 위 4,000만 원을 이체하기 전에 자신에게 보고를 했는데, 원고가 “안 된다.”라고 해서 자신도 피고에게 “그러면 회사가 깨진다. 안 된다.”라고 말했음에도 피고가 위 이체를 하였다는 내용의 증인 F의 증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변제 당시 소외 회사에게 ‘통모적 해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변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지창구